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호 2285

제출연월일: 2024. 7. 26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민간의 자율적 협의에 따라 비용분담이 가능함에도 관행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,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분담금 및 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행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4조(유지·관리 및 보수 비용) 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안에 있는 공동시설의 유지·관리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지등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.

제64조의2를 삭제한다.

제65조제1항 중 "이용자 분담금·원인자 부담금 또는 유지·관리"를 "관광지등의 안에 있는 공동시설의 유지·관리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전에 부과된 이용자 분담금 또는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제64조의2 및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혀 행

개 정 안

제64조(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) ①사업시행자는 지원시 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.

②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 행위가 있으면 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 담하게 할 수 있다.

③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안에 있는 공동시설의 유지·관리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지등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수 있다.

제64조의2(분담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) ① 사업시 행자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 담금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

제64조(유지・관리 및 보수 비용)
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안에 있는 공동시설의 유지・관리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지등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수 있다.

<삭 제>

른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 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 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 (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)에 따 른다.

제65조(강제징수) ①제64조에 따라 이용자 분담금 · 원인자 부담 금 또는 유지 · 관리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국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. ② (생략)

65조(강제성수) (1)
관광지등의 안에 있는 공동
시설의 유지·관리
② (현행과 같음)